

KEPIC 인증심사 신청절차 안내

□ 자격인증 절차

[기본 절차]	[세부 절차]	[수행]	[소요 일정]
신청서류 접수	-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(각 분야 협회 담당자) * 첨부서류 : 모의사업 준비현황, 회사 조직도, 회사 현황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확인서,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, 심사점검표, 품질보증/시스템계획서, KEPIC 인증서 사본 (갱신 시) ※ 갱신 시, 심사희망기간은 인증서 만료일 2개월 전으로 작성 필요	신청기관	심사예정일 6개월 전
↓	- 신청서류상 희망 심사일 검토하여, 협회 담당자가 이메일로 회신	협회	
심사일정 확정			
↓	-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(이메일)	협회/ 신청기관	
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(필요시)			
↓	- 협회에서 이메일로 송부하는 계약서(안) 파일 2부 인쇄 후, 날인 및 간인하여 우편으로 전기협회에 송부(계약 체결 전 조항검토 필요)	협회/ 신청기관	심사예정일 약 2개월 전
심사계약 체결			
↓	- 심사신청료 : 인증심사 계약 후 7일 이내 - 현장심사비 : 현장심사 개시 전까지 - 인증서 발행비 : 인증서 발급 전까지 ※ 일시납 가능 - 입금 은행/계좌번호 : 우리은행/1005-902-657071(대한전기협회)	신청기관	
심사비 납부			
↓	- 업체 담당자에게 심사 계획서 및 심사 보고서 양식 송부	협회	심사예정일 약 1주일 전
심사 계획서 송부 및 현장심사			
↓	- 심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추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소명 등 후속조치 필요	협회/ 신청기관	심사시행일이 속한 달의 익월
인증서 발행여부 심의 (해당 전문위원회)			
↓	- 이메일로 인증서 사본(스캔본) 송부 - 원본 발행 : 인증서 발행비(55만원) 입금 확인 및 인증업체 이행사항, 심사 만족도 조사 파일 이메일 회신 완료 시 - 해당 전문위원회 미승인 시 재심사 필요(인증서 발행 보류)	협회/ 신청기관	해당 전문위원회 심의 이후
인증서 발행			

□ 관련 업무별 담당자

관련 업무	담당자(연락처, 이메일)
1. 신청서류 접수·보완	
- 발전사업자, 시공, 기계(MN)	조 경 윤 차장(02-2223-3752, cky113@kea.kr)
- 구조(SN)	박 수 연 과장(02-2223-3758, narapoo@kepic.org)
- 재료, 역무(구조 설계)	장 재 은 과장(02-2223-3753, jje@kepic.org)
- 전기(EN), 공조기기(MH)	최 재 윤 직원(02-2223-3756, cgy@kepic.org)
2. 심사일정 협의 및 확정	주 현 재 팀장(02-2223-3751, jhj@kepic.org)
3. 심사 계약(심사비 산출) 및 인증서 발행	박 수 연 과장(02-2223-3758, narapoo@kepic.org)